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단317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임호택, 성락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한 2016. 11. 1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 1) D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험가입금액 6,447,600원으로 정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원고는 D과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0. 7.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보험금 6,447,600원을 지급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30. ‘C은 원고에게 1,506,630원 및 그 중 1,489,500원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35204)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9. 확정되었다.
- 4) 2016. 11. 13.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금 1,489,500원과 지연손해금 등 4,613,441원 합계 6,102,941원이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

- 1) C의 배우자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6. 11. 13.경 사망하였다. 당시 E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녀인 피고, D, F, G이 있었다.
- 2) E의 상속인들은 2016. 11. 13.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5. 접수 제4918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부터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갑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11의 상속지분 외에 충청남도 서천군 H 도로 127㎡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는 C의 I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토지의 2017. 1. 1. 기준 공시지가는 461,010원, 2020. 1. 1. 기준 공시지가는 523,240원인 사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 6,102,941원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이 사건 아파트 외 C의 유일한 재산인 위 충청남도 서천군 H 소재 토지 가액을 초과하므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E이 사망하기 전까지 E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C의 위 분할협의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E이 부부관계이고, C과 피고가 부자관계인 점, 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4, 5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법정상속분 3/11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월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54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월근콩크리트조 60.1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4100분의 3414

- 끝 -

